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2025. 1.

## 목 차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3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	32
III.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52
IV. 간편제출하기 .....	61

#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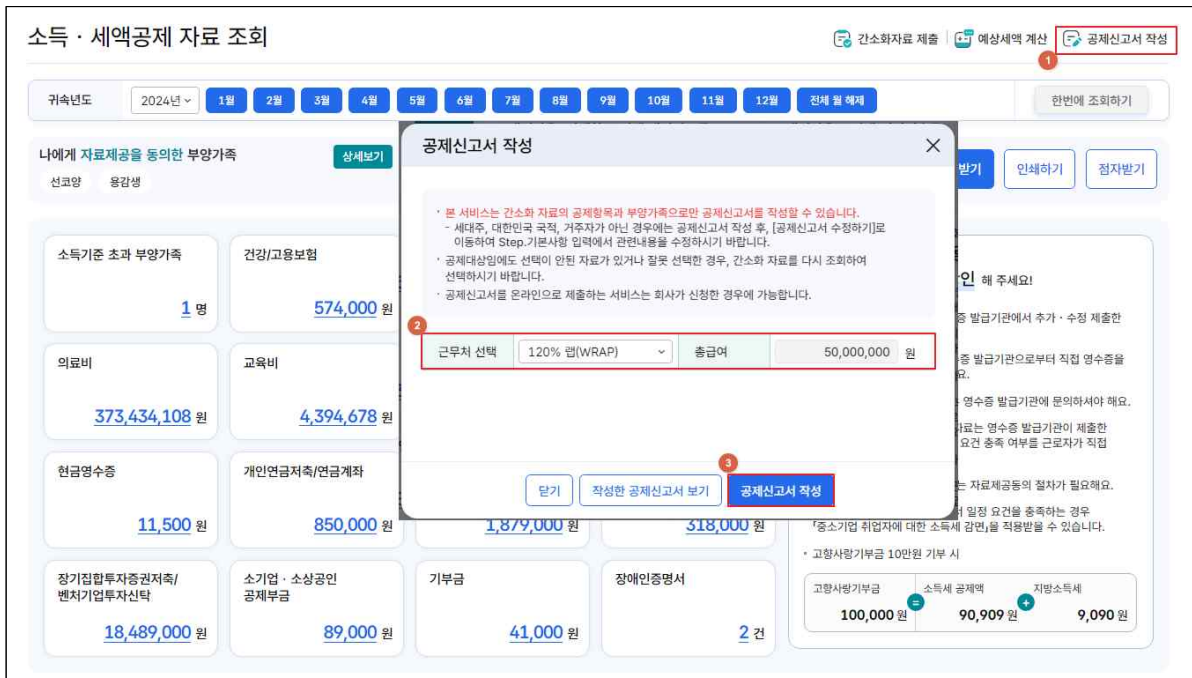
##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Year-end tax settlement simplified data search) interface. It featur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options like '편리한 연말정산' (Convenient year-end tax settlement) and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Tax credit return preparation and submission). The main area shows a search filter for the year 2024 and a grid of categories for data search, including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Excess income support family members), '건강/고용보험' (Health/Employment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Premiums),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s), '직불카드 등' (Direct Payment Cards, etc.), '현금영수증' (Cash Receipts),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Individual Pension Savings/Pension Accounts),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using Acquisition Savings), '정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Regular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Venture Investment Trust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Small Business/Small Business Public Fund), '기부금' (Donations), and '장애인증명서' (Disability Certification). A summary box on the right indicates a total of 100,000 won, with 90,909 won in tax credits and 9,090 won in tax payments.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부양가족 입력
Step 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개인3님 | 120% 랩(WRAP) 101-08-90629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부양가족 추가 +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
선택삭제 -

☐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 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결혼	자녀(기본)	출산임양
☐	소속자 본인 ▾	내국인 ▾			N ▾	Y ▾	N ▾	N ▾	N ▾	국가유공자 줄 ▾	N ▾	N ▾	N ▾
☐	소속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Y ▾	N ▾	N ▾	N ▾	N ▾	N ▾	N ▾	N ▾	N ▾
☐	직계비속(자녀 및 권 ▾	내국인 ▾			N ▾	N ▾	N ▾	N ▾	N ▾	장애인복지법 ▾	N ▾	N ▾	N ▾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부양가족 입력    Step 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소득·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출력 또는 PD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제출하기    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설문조사 가기

#### 1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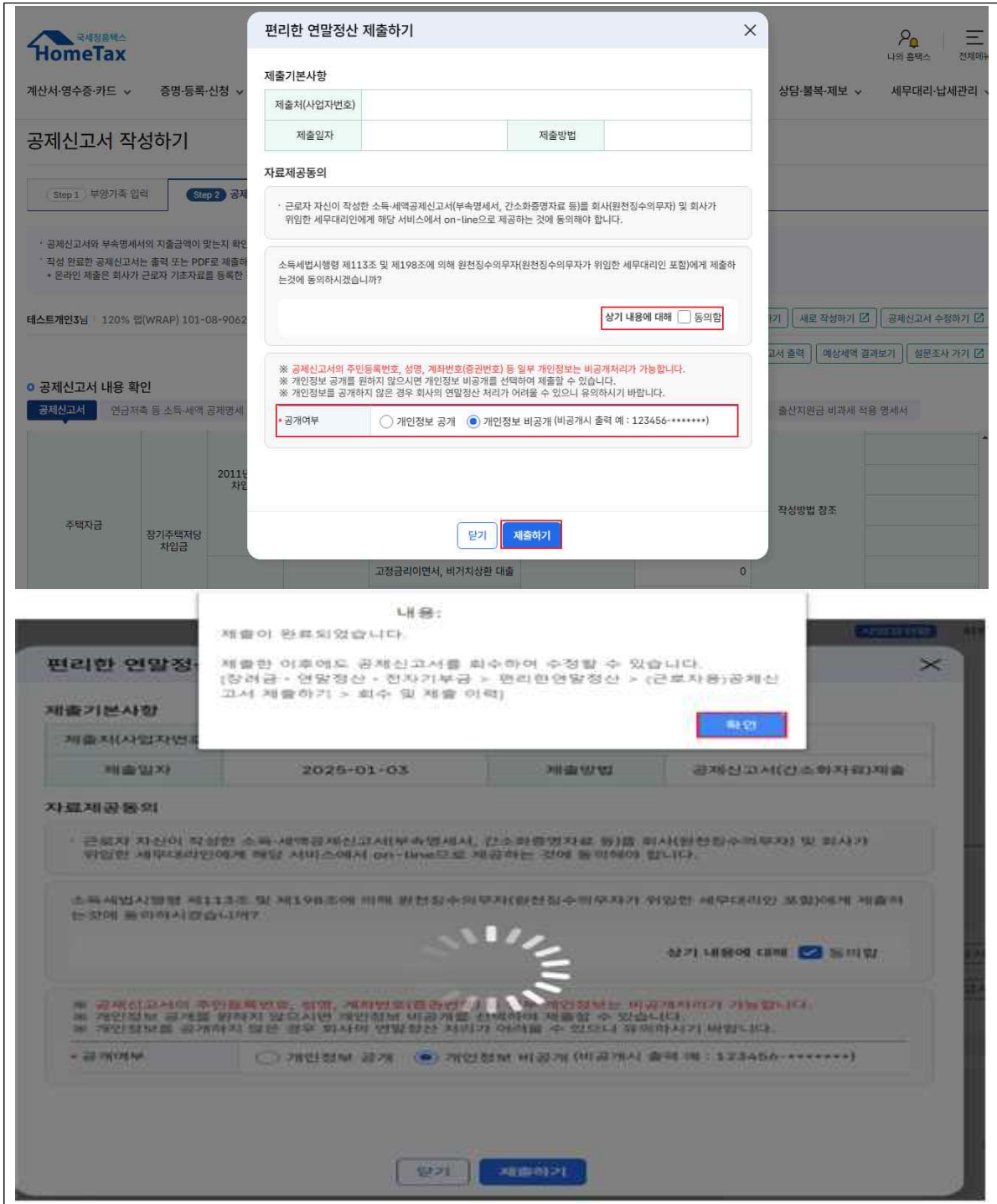
공제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radio"/>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radio"/> 100% <input type="checkbox"/> 80%		

-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윈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 5. 기본사항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제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돌아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았거나, 예상세액 계산 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등록된 총급여액 등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제출(온라인)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 조회 및 중(전)근무처의 총급여액 입력은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테스트개인3 님 | 120% 랩(WRAP) 101-08-90629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800101-*****	소득자 성명	테스트개인3
사업자등록번호	101-08-90629	<b>수정/추가입력</b> <b>출산지원금 비과세 입력</b>	근무처 명칭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KR   대한민국 <b>조회</b>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b>조회</b>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type="radio"/> 120% <input checked="" type="radio"/> 100% <input type="radio"/> 80%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가능	분납신청여부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미신청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무주택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무주택(어) <input type="radio"/> 주택보유(부) * 무주택 : 23.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총급여	50,000,00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Step.01 기본사항 입력’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 ②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수정/추가입력’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중(전)사업장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중(전)사업장 추가는 사업자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 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5-1.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근무처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질세안내를 이용하시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현)근무지 (단위: 원) 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비고	연금보험료합계금액	건강보험료합계금액	고용보험료합계금액	기부금
<input type="radio"/>	<span>확인</span>		40,000,000	간편제출 자료	0	0	0	
<input checked="" type="radio"/>	<span>확인</span>		50,000,000	간편제출 자료	0	0	0	

※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기초자료(급여내역)를 입력해야 공제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전)근무지 자료 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보험료합계금액	건강보험료합계금액	고용보험료합계금액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span>확인</span>		0	0	0	0	0	

닫기 반영하기

-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①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①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②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④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6. 부양가족 확인(5p와 동일한 화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돌아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추가 +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    선택삭제 -

☐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본 초과여부	기본 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결혼	자녀(기부)	출산임양
☐	소득자 본인 ▾	내국인 ▾			N ▾	Y ▾	N ▾	N ▾	N ▾	국가유공자 중 ▾	N ▾	N ▾	N ▾
☐	소득자의 직계존속 ▾	내국인 ▾			Y ▾	N ▾	N ▾	N ▾	N ▾	N ▾	N ▾	N ▾	N ▾
☐	직계비속(자녀 및 손 ▾	내국인 ▾			N ▾	N ▾	N ▾	N ▾	N ▾	N ▾	N ▾	N ▾	N ▾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장애인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고,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유형을 'N'으로 선택해야합니다.

- 출생·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 7.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공제신고서 초기화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소득공제 명세 (단위 : 원) ^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입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보험료공제	수정	214,000	0	214,000
- 국민연금보험료		214,000	0	214,000
-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적연금보험료		0	0	0
<input type="checkbox"/> 특별소득공제		1,651,000	13,764,188	15,415,188
- 국민건강보험	수정	477,000	0	477,000
- 고용보험		97,000	0	97,000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	수정	717,000	0	717,000
- 대출기관		717,000	0	717,000
- 거주자		0	0	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수정	360,000	13,764,188	14,124,188
개인연금저축	수정	234,000	0	234,000
주택마련저축	수정	318,000	0	318,000
신용카드 등	수정	55,260,000	0	55,260,0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수정	121,000	0	121,00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수정	98,000	0	98,000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소득공제(기타)		18,359,000	0	18,359,00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수정	89,000	0	89,000
- 투자조합출자 등	수정	18,270,000	0	18,270,000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수정	0	0	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수정	0	0	0

· 세액감면·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616,000	0	616,000
- 과학기술인공제		207,000	0	207,000
- 퇴직연금		172,000	0	172,000
- 연금저축		207,000	0	207,000
- ISA 추가 납입액		30,000	0	30,000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8,029,299	21,111,111	29,140,410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216,000	0	216,000
- 보장성		89,000	0	89,000
- 장애인전용보장성		127,000	0	127,000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5,193,221	0	5,193,221
- 본인·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5,193,221	0	5,193,221
- 난임시술비		0	0	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0	0	0
- 그 밖의 공제 대상자		0	0	0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2,579,078	0	2,579,078
- 소득자 본인		2,409,078	0	2,409,078
- 취학전 아동(0명)		0	0	0
- 초·중·고등학교(1명)		170,000	0	170,000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0명)		0	0	0
- 장애인(0명)		0	0	0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41,000	21,111,111	21,152,111
- 정치자금기부금		6,000	0	6,000
- 고향사랑기부금		0	0	0
- 특례기부금		10,000	21,111,111	21,121,111
- 우리사주기부금		6,000	0	6,000
- 일반기부금 종교외		7,000	0	7,000
- 일반기부금 종교		12,000	0	12,000
월세액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802,000	0	802,000
주택차입금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0	0	0
세액감면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외국납부세액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0	0	0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 8.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간소화 자료 납입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로자	종(전) 근로자		
국민연금	-	-	1,500,000	0	5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로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	-	0	0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	-	0	0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	0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연금	-	-	0	0	0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된 연금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 보험료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간소화 자료 금액  
 \* 소득월액 : 0 원, 보수월액 : 1,456,75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로자	종(전) 근로자		
건강보험료	-	-	1,000,000	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	0	0	1,20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2  
반영하기 닫기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구분	1 국세청자료	2 국세청자료 차감	3 기타	상환액 합계
대출기관	600,000	0	600,000	1,200,000
거주자	0	0	5,000,000	5,000,000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시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운
...	...	확인	2021-04-01	2021-08-25	6	5,000,000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계약기
...	...	확인	단독주택	85	세종시	2018-10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반영하기 닫기

-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2주택 보유 여부 등 **소득공제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하단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으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시기	상환기간-방법	한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자료	합계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0	0	65,300	65,300
	15년~29년	1,000만원	120,000	0	300,000	420,000
	30년 이상	1,500만원	120,000	0	5,000,000	5,120,00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2,0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0	0	888,888	888,888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2,000만원	0	0	0	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20,000	0	0	120,000
	15년 이상 그밖의 대출	800만원	0	0	980,000	980,000
	10년 ~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0	0	6,530,000	6,530,00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상환기간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상환 차입금	당해년원금 상환액	최초 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 합계액
아선인시 (말)	무주택자의중도금대출	0	0	0	0	2011-05-05	2026-06-17	15년	2011-05-05	2011-05-05	120,000
아선인시 (말)	기준주택구입	0	0	0	0	2011-05-05	2041-02-18	30년	2011-05-05	2011-05-05	120,000
아선인시 (말)	주택분양권대출	10,000	10,000	0	0	2022-06-14	2037-11-01	15년	2022-06-14	2022-06-14	120,000

※ 이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연장, 전환) 관련내용 펼치기 ▾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한도 : 72만원)  
 ※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주)부산은행		100,000	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새마을금고		134,000	0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선택-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

요약설명 및 공개요건 펼치기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주)국민은행 ▾		2014-04-19 📅	77,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국민은행 ▾		2023-10-12 📅	133,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주)국민은행 ▾		2024-11-24 📅	108,000	0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주택마련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선택- ▾		yyyy-mm-dd 📅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선택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전액
			신용카드 사용자	소계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국세청 자료	55,260,000	14,650,000	113,000	40,008,000	114,000	163,000	0	
		(-)차감금액		0	0	0	0	0	0	
		합계	55,260,000	14,650,000	113,000	40,008,000	114,000	163,000	0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선택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전액
			신용카드 사용자	소계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기타자료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 공제대상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금액에 차감할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 경우 국세청자료 하단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 부호 없이 양수로 입력합니다.
  - \* 예) 현금영수증 50만원 차감시 (-)차감금액 해당 란에 500,000 입력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각의 원래의 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

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주)우리은행 ▾		121,000	0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선택- ▾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선택	가입일	계약기간월수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2023-07-05 📅	10	새마을금고 ▾		98,000	0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선택	가입일	계약기간월수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yyyy-mm-dd 📅		새마을금고 ▾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X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매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단위 : 원)

구분	납입금액	차감금액
국세청자료	89,000	0
기타자료	0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 연금계좌

✕
요약설명 및 강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	321,344	0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국건설은행	██████████	454,657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ISA계좌 연금구분 퇴직연금	노무라금융투자	██████████	1,651,561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KEB하나은행(구.주식회사 하나)	██████████	4,324,546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신협조합	██████████	561,619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기관	██████████	432,432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 보험료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명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료 내역에 반영됩니다.  
 ※ 올바르지 않은 주민번호 등으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은 보장성 보험료 자료는 수동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내역**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자료구분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자료 차감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	국세청자료 ▾	89,000	0	0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	국세청자료 ▾	0	127,000	0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	기타자료 ▾	0	0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 의료비

**의료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열리기

간소화서비스에서 1.20.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증명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국세청자료저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를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하여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상호	건수	지출액	국세청차감액
황창가	국세청장이 재공하는 코드	본인	일반의료비	알지***	1	4,500	0
황창가	국세청장이 재공하는 코드	본인	안경구입비	관도****	1	545,100	0

※ 안경구입비는 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출급이 7년만인 이하)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초과 출산의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	공제항목	자급제 사업/가동/역번호	상호	건수	지출액
황창가	기타 의료비영	본인	일반의료비	미지	(가) 내합	1	100,000

실손의료비 차감액(공제 제외금액)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차감액 계인정보호법에 의해 제공됨을 받은 부양가족이라도 본인만 조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단위: 원)

기본공제대상자	실손의료보험금		
	국세청 자료 금액	국세청 자료 차감액	기타 자료 금액
0	0	0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 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자료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시려면 부양가족별로 기타자료금액에 입력합니다.

## □ 교육비

교육비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 등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취학 전 학원비 지출금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 후 '공납금'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input type="checkbox"/>	피교육자	자료구분	공제종류	공납금	공납금 차감액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차감액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 차감액
<input type="checkbox"/>	테스트개인3 ▾	국세청 자료 ▾	소득자본인 ▾	2,409,078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checkbox"/>	가공노동증7 ▾	국세청 자료 ▾	초·중·고등학교 ▾	0	0	170,000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checkbox"/>	선코양 ▾	기타 자료 ▾	---선택---	<input type="text" value="0"/>	0	0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text" value="0"/>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50만원 한도)와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30만원 한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취학전(1~2월) 학원비 자료를 추가 하려는 경우,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 후 '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 회계 공시 의무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공시 여부를 미리 확인 후 기부 명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여부 확인) 고용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labor.moel.go.kr/pap](http://labor.moel.go.kr/pap)) → 회계공시열람 → 회계공시여부 조회

해당연도 기부 명세
(단위: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	자료구분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금액	국세청자료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특례기부금	금전	테스트개인	201-81-37223	확인	(역) 대판중앙	1	10,000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정치자금기부금	금전	테스트개인		확인		1	6,000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일반	금전	테스트개인	201-81-37223	확인	(역) 대판중앙	1	7,000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일반	금전	테스트개인	214-81-69467	확인	아선인시 (말)	1	12,000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우리사주조합기	금전	테스트개인	214-81-69467	확인	아선인시 (말)	1	6,000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단위:원)

기부종류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합계	41,000	41,000	0	0	0	0
정치자금기부금	6,000	6,000	0	0	0	0
특례기부금	10,000	10,000	0	0	0	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6,000	6,000	0	0	0	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12,000	12,000	0	0	0	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7,000	7,000	0	0	0	0

#### 기부금 조정 명세

(단위:원) 선택내용 삭제 - 이월분 입력 + 이월분 조회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분까지 공제된 금액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2024	10,000	0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기부금	2024	6,000	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4	7,000	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4	12,000	0
<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024	6,000	0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2014	21,111,111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월세액** ✕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1,000만원 한도) × 15%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1,000만원 한도) × 17%

**국세청 자료**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임대인성명 (상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연간 월세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24		2024-02-10	2025-11-17	126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35		2023-01-01	2025-01-01	600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15		2024-12-20	2026-06-26	76

**기타 자료** (단위 :㎡, 원) 자료추가 + 선택내용 삭제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임대인성명 (상호)	주택유형 코드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연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선택---</span>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yyyy-mm-dd</span>	<input type="text"/>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yyyy-mm-dd</span>	<input type="text"/>

※ 작성하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6p와 동일한 화면)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부양가족 입력
Step 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소득·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출력 또는 PD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수정」버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제출하기
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실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신고서
연금지출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분담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①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03으로 이동하여 지출 금액을 수정합니다.
- ②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 ③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9-1. 기타서류 첨부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 1 부양가족 입력
Step 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소득·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출력 또는 PD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수정,버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제출하기
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실문조사 가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①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기타서류 첨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기타서류 등록

· 첨부  
· 기타

**파일 업로드**

**파일 목록**

번호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6 개 60 MB 제한      0 개, 0 byte 추가됨

닫기

②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파일찾기’를 클릭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기타서류 등록** ✕

---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 기타서류는 **10개까지 업로드 가능(총 크기 50 MB 이하)**하며, 한번에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최대 5개**입니다.

**파일 내역**

번호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시	파일 내려받기	관리
1	( 김국세 )-이미지 1.png	157.96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2	( 김국세 )-이미지 2.png	32.88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3	( 김국세 )-이미지 3.png	17.78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4	( 김국세 )-이미지 4.png	18.64 KB	2021-12-15 15:50:5	내려받기	삭제

**닫기**

- ③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하여 추가업로드하거나 삭제합니다.
- 파일명은 [(납세자성명)-파일이름]의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업로드한 파일은 각각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사용해 압축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업로드한 파일을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공제신고서 제출 전 ‘삭제’버튼을 클릭해 파일내역에서 삭제합니다.
  - 자료첨부는 10건까지 가능하며 1건당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첨부한 파일은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시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 9-2. 간편제출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하기**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증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비공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123456-\*\*\*\*\*)

닫기 제출하기

---

dev.hometax.go.kr 내용: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도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2025-01-03	제출방법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	--	------	------------	------	----------------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증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비공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123456-\*\*\*\*\*)

닫기 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연말정산]

정산-간편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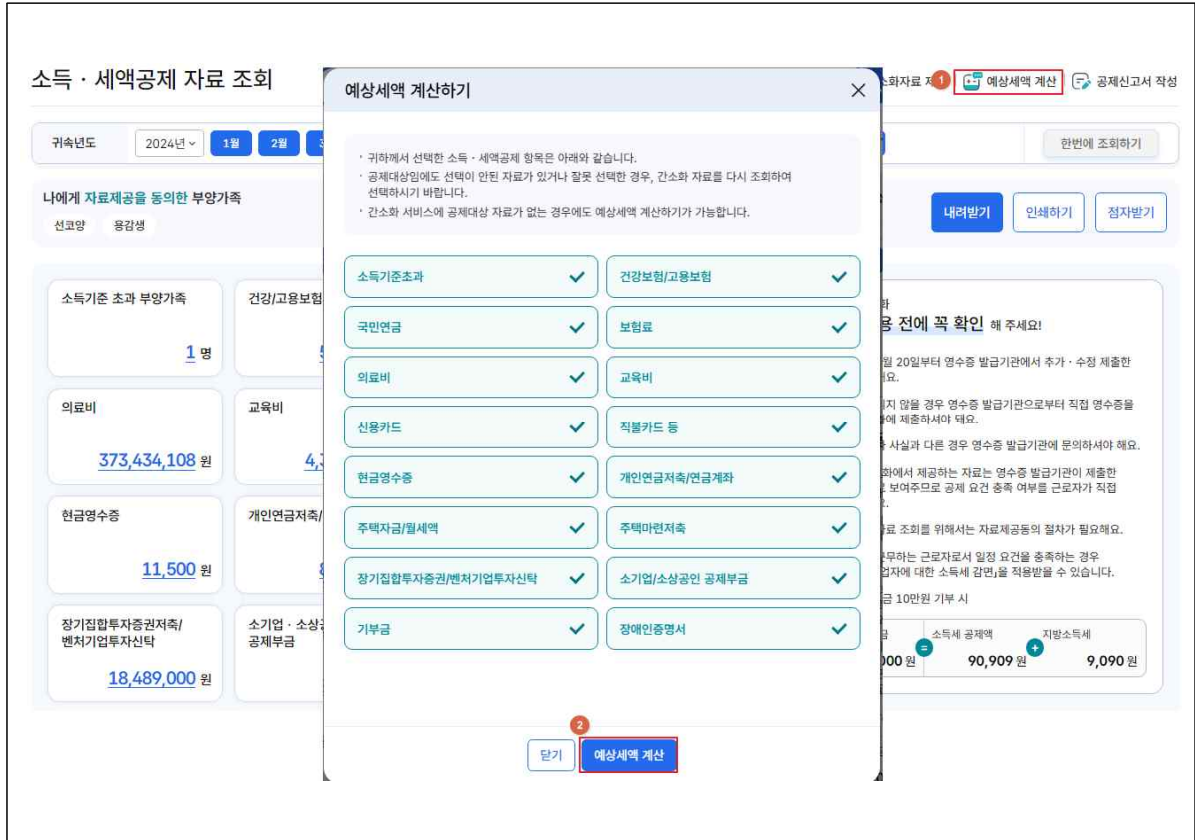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The screenshot displays a user interface for tax services. On the left, a '가이드 맵' (Guide Map) section titled '편리한 연말정산' (Convenient Year-end Tax Settle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ervices, hours (06:00-24:00), and contact numbers (126-5). The main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umns: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관리 (회사용)', and '부가 서비스'. The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column contains a list of options: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highlighted with a red box),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and '간편제출하기'. The '공제신고서 관리' column includes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관리', '지금명세서 작성·관리', and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The '부가 서비스' column lists '키워드 연말정산', '동영상 따라하기',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자용 매뉴얼', and '서비스 만족도 조사'.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홈](#)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 이용안내 도움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01 step** 세액 계산하기

**02 step**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계산한 예상세액을 최근 2년간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항목별 유의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직접 작성

Step.01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직접 입력한 총급여 및 공제자료와
- 간소화 조회자료 이용 → 예상세액 계산
- 회사에서 등록한 경우 자동 반영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올해 예상세액과 최근 2년간 연말정산 결과 비교
- 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유의 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문의

!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상담 (홈텍스 이용·세법문의) : ☎ 126 > ⑤
- 지급명세서 및 환원세 문의 : ☎ 126 > ② > ③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4 -

## 2. Step.01 세액 계산하기

### 1) 근무처 선택

**근무처선택** ✕

· 복수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주(현)근무처에서 이를 합산하여 장산하여야합니다.  
 하나의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3년간의 추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근무처 연말정산자료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귀속연도별 근무처를 선택하세요

· 2018년 귀속 (단위: 원)

선택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110-11-1111111	국세청	서울특별시지치시 국세청로 8-1...	2018-01-01	2018-12-31	71,165,810	3,281,706

· 2019년 귀속 (단위: 원)

선택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110-11-1111111	국세청	서울특별시지치시 국세청로 8-1...	2019-01-01	2019-12-31	72,163,730	1,718,840

· 2020년 귀속 (단위: 원)

선택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type="radio"/>	110-11-1111111	(주)한국인수업자...	서울특별시지치시 인수업자...	2020-01-01	2020-12-31	0	0
<input checked="" type="radio"/>	110-11-1111111	(주)한국인수업자...	서울특별시지치시 인수업자...	2020-01-01	2020-12-31	45,060,000	0
<input type="radio"/>	110-11-1111111	한국인수업자...	서울특별시지치시 인수업자...	2020-01-01	2020-12-31	33,300,000	0

닫기
적용하기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근무처를 선택 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 간편제출 >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 세액계산하기 Step 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 가기

-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간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제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택이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장치자금기부금과 우리아주조항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됨))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 회사등록 기초자료반영 >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 수정 >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120% 랩(WRAP) 반영하기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급여 및 예상세액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X

-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미리 채워줍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기본사항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단위 : 원)

*총급여	1 50,000,000	2 <b>계산하기</b>
근로소득공제(자동계산)	12,250,000	
근로소득금액(자동계산)	37,750,000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3 0	

•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닫기 초기화 **4 적용하기**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 3) 소득공제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단위: 원)

※ \*클 클릭하면 그림별 상세항목이 펼쳐지며,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공제항목명	사유(납입) 금액	소득공제액 (㉑)	공제한도 (㉒)	한도미달액 (㉓-㉑)
인적공제	① 1	-	6,500,000	-
기납부세액	-	-	-	4,500,000
추가공제	-	-	2,000,000	-
연금보장료공제	② 2,000,000	2,000,000	0	-
특별소득공제	13,741,924	10,021,924	-	-
건강보험료 등	③ 2,701,000	2,701,000	-	-
주택자금	④ 11,040,924	7,320,924	-	-
주택임차 차입금 원 리공제(주택 대출기간)	1,200,000	480,000	-	-
주택임차 차입금 원 리공제(주택 대출기간)	5,000,000	2,000,000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4,840,924	4,840,924	-	-
기부금(이월분)	⑤ 0	0	-	-
그 밖의 소득공제	74,403,228	13,928,076	-	-
개인연금저축	⑥ 12,000,000	720,000	720,000	0
소기업 소상공 인 공제부금	⑦ 6,000,000	5,000,000	5,000,000	0
주택마련저축	⑧ 1,200,000	480,000	-	-
투자조합출자 등	⑨ 2,939,937	1,639,937	15,225,000	0
신용카드	⑩ 43,921,530	6,000,000	6,000,000	0
우리시주주회 출연금	2,000,000	28,079	15,000,000	0
과세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⑪ 3,543,540	0	10,000,000	0
장기합작투자 출자세액	2,738,101	0	2,400,000	0
<b>소계</b>	-	<b>30,450,000</b>	-	-

**도움정보**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주의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8.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 재혼한 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민법 또는 입양추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1998.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ii.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iii.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줍니다.

항목	변경		
	2017년 (㉑)	2018년 (㉒)	증감 (㉓-㉑)
총급여	38,271,210	42,000,000	3,728,790
근로소득공제	10,393,681	11,550,000	553,319
근로소득금액	27,280,529	30,450,000	3,169,471
투자조합출자 공제한도금액	13,640,264	15,225,000	1,584,736
신용카드 공제문턱 (공제제한)	9,567,802	10,500,000	932,198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0,000	3,000,000	0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660,000	660,000	0

### ※ 도움정보

- i. 공제 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입니다.
  - ii.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iii.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줍니다.
- 인적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인적공제(기본 및 추가) 상세자료 입력** ✕

---

**· 기본공제** 기본공제설명 펼치기

-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 받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단위 : 원)

항목	금액
본인기본공제	1,500,000
배우자공제	1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input type="text" value="0"/> 명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그외	<input type="text" value="0"/> 명
형제지매	<input type="text" value="0"/> 명
부양가족공제 수급자	<input type="text" value="0"/> 명
부양가족공제 위탁아동	<input type="text" value="0"/> 명

**· 추가공제** 추가공제설명 펼치기

항목	금액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	2 <input type="text" value="0"/> 명
장애인공제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녀자공제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한부모공제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3

- ①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②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③ 입력이 끝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보험료공제 상세자료 입력 ✕

· 연금보험료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2,000,000	0
공무원연금 보험료공제	0	0
군인연금 보험료공제	0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공제	0	0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공제	0	0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등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상세자료 입력 ✕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1,500,000	1,5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1,201,000	1,20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상세자료 입력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금)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1,200,000	480,00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5,000,000	2,000,000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이전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한도)	0
	15년~29년 (1,000만원 한도)	0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2,000만원 한도)	1,585,300
2012년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2,000만원 한도)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0
	15년 이상 그밖의 대출 (800만원 한도)	0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600만원 한도)	0

-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상세자료 입력

·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00,000	720,00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상세자료 입력** ✕

·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액			<table border="1"> <tr> <th>사업(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4천만원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6,000,000	5,000,000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 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인 사업자와 소기업에 해 당하는 법인대표자가 가입 가능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상세자료 입력** ✕

·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청약저축 납입액	0	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 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가입분)	1,200,000	480,000	무주택확인을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가입분)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0	0	법률 제 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 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투자조합출자공제 2022년	벤처등 투자금액 (100%,70%,30%)	0
	조합1 투자금액 (10%)	0
	조합2 투자금액 (10%)	0
투자조합출자공제 2023년	벤처등 투자금액 (100%,70%,30%)	0
	조합1 투자금액 (10%)	0
	조합2 투자금액 (10%)	0
투자조합출자공제 2024년	벤처등 투자금액 (100%,70%,30%)	0
	조합1 투자금액 (10%)	0
	조합2 투자금액 (10%)	0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사용액	
◎신용카드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12,232,203	
◎직불카드등(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1,234,560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233,330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57,460
	◎직불카드사용분	6,742,430
	◎현금영수증사용분	345,790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234,610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234,510	
<b>소비증가분</b> (단위 : 원)		
2023년 전체 사용분	12,000,000	
2024년 전체 사용분	23,957,943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 상세자료 입력 ✕

· 그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설명 글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input type="text" value="0"/>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text" value="0"/>	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text" value="0"/>	0

항목	임금소득감액	공제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input type="text" value="0"/>	0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4) 세액감면·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단위: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금액	세액공제액 (①)	공제한도 (②)	한도미달액 (②-①)
세액감면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①	-	0	-
근로소득		-	660,000	-
결혼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②	-	0	-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③	-	0	-
- 기본		-	0	-
- 출산일당		-	0	-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④	0	0	-
- 퇴직연금계좌		0	0	-
- 연금저축계좌		0	0	-
- ISA 추가납입액		0	0	-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0	0	-
- 보장성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⑤	0	0	270,000
- 의료비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⑥	0	0	-
- 교육비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⑦	0	0	-
- 기부금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⑧	0	0	-
- 표준세액공제		-	0	-
납세조합공제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⑨	0	0	-
주택차입금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⑩	0	0	-
외국납부세액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⑪	0	0	-
월세액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⑫	0	0	1,700,000
소계		-	660,000	-

초기화      설문조사 가기      계산하기      계산결과상세보기      저장      Step 02 가기

- ① ~ ⑫ 세액 감면·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합니다.

○ 세액감면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세액공제 세액감면 상세자료 입력** ✕

· 세액감면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참고하여 '감면대상금액'을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단위 : 원)

항목		감면대상금액	감면세액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		0	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등 감면	50%	0	0
	70%	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70%	0	0
	90%	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50%	0	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90%	0	0
	50%	0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50%	0	0
	30%	0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0	0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0	0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자녀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자녀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 자녀 세액공제

항목	공제인원	공제액
자녀	1 명	0 원
출생·입양	<input type="checkbox"/> 첫째	0 원
	<input type="checkbox"/> 둘째	0 원
	셋째 이상 0 명	0 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8세 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출생·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 혹은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연금계좌 세액공제(하단의 납입액은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을 미포함) 연금계좌 세액공제 설명 팝창기

(단위 :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액)	0	0
퇴직연금(납입액)	221,000	33,150
연금저축(납입액)	171,000	25,650

(단위 :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금액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	20,000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 추가납입액	9,000	4,350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세액공제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보험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설명 팝창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4,725,116	0
장해인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1,200,000	0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각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의료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의료비 세액공제 설명 필지기 ▾

(단위 : 원) 가족입력 추가 + 가족입력 삭제 -

의료비 지출액(공제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

구분	일반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 이상·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본인	450,000	0	0	0	0
가족1	0	0	0	0	0
가족2	0	0	0	0	0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세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시유한급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하기 (단위 : 원)

항목	금액
① 난임시술비	0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0
③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450,000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0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자동계산)	0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①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입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 ②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③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④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교육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교육비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 교육비 지출액(공제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

①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종류	공납금	교복비구입	체험학습비
<input type="checkbox"/>	미취학아동 교육비	432,457	0	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본인	908,090	0	0

· 교육비 세액공제 ② **계산하기** (단위: 원)

항목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1,340,547
교육비 세액공제액(자동계산)	0

③

- ①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하고 공제 종류, 공납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30만원 한도임.
-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계산된 값은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어 계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금액			공제금액
		회사자료	국세청자료	기타	
일반기부금(중고단체)	2023	0	16,000	0	2,400

닫기 초기화 적용하기

- 각 항목에 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기준이 2014년~2015년 이월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5%, 2016년~2018년 이월 기부금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019년~2020년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하였음
- 2021~2022년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공제함
- 2023년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함
- 2024년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를 공제함
-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 간 가능함

○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 - '田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기타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기타세액공제 (단위 :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등	공제세액
납세조합공제 공제세액	0	0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7,856,754	0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87,689,760
	국외 총급여	5,435,436
월세액 지급액	4,505,563	0

- 각 항목에 공제대상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⑨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연도별 현황

(단위: 원)

귀속년도	사업자번호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정수세액
2016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19,936,980	0	133,180	-133,180
2017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19,165,500	0	129,700	-129,700
2018	101-82-*****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갑도	40,000,000	423,699	2,000,000	-1,576,300

※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매월 내는 세금이 적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월 내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80% or 100% or 120%)할 수 있으나,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비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세부담 현황

(단위: 원)

· 왕왕가님의 2019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명목상 세율은 15.00%이지만, 실제 부담하시는 세율(실효세율)은 2.12%입니다.

귀속년도	과세표준	결정세액	명목세율(%)	실효세율(%)
2017	7,957,200	0	6.00	0.00
2018	8,131,238	0	6.00	0.00
2019	19,970,260	423,699	15.00	2.12

※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입니다.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공제항목별 현황

(단위: 원)

귀속년도	기본공제 합계	추가공제 합계	연금보험료공제 합계	특별소득공제 합계	그밖의 소득공제 합계	세액감면·공제 합계
2017	1,500,000	500,000	397,140	796,590	435,503	453,432
2018	1,500,000	500,000	0	753,420	156,017	487,874
2019	3,000,000	0	2,384,100	395,640	3,000,000	1,491,840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 Ⅲ.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가이드 맵**

### 편리한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일**

- 3.10. : 간편제출하기
- 5.31.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

**이용시간**

**백업 06:00~24:00**

※ 1.27.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로 이용자가 많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문의**

- 연말정산 관련 상담 (홈택스 이용·세법문의) 126 ① ⑤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126 ② ③

###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근로자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 예상세액 계산하기 >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 간편제출하기 >

※ 공제신고서 회수 및 제출 이력은 간편제출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 관리 (회사용)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 공제신고서 관리 >
-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
-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

### 부가 서비스

- 키워드 연말정산 >**
- 동영상 따라하기 >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 근로사용 메뉴얼 >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이 서비스는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고,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안내 도움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01 step 자료 제공 동의하기

02 step 절세 안내 보기

**이용 절차**

필수 실행 절차		Step.01	Step.0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당초 계산한 예상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의 사항**

-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입력한 공제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총급여,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반드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정확한 절세 효과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다른 소득으로 인한 세율 구간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달라짐)
- 이 서비스 안내결과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추가로 하여야 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항목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문의**

!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상담 (홈택스 이용·세법문의) : ☎ 126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2 > 3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항목별 공제 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안내하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 가기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려는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용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으며, 공제신고서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총부담세액)과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 그 차액만 안내합니다.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성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	---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성명	기억남	관계	배우자

본인(기억남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가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나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 가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  ① 배우자주민등록번호  -  ②  ③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 가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  ① 배우자주민등록번호  -  ②

※ (배우자)님이 병장명(본인)님에 대해 공제신고서 자료제공동의를 되어있습니다. ②

본인	<input type="button" value="공제신고서 완료"/> ③
배우자	<input type="button" value="공제신고서 완료"/> ③

④

-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목록조회

	본인(범장명)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조회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목록조회

	본인(범장명)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공목티	공완다,말논원,민가솔,서공유,아차티,...			
사례 2	공목티,공완다	말논원,민가솔,서공유,아차티,황안,한...			

계산하기

- ‘계산하기’를 누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조합하여

공제받는 지에 따른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 가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 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 목록조회

엑셀다운로드

	본인(범장명)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공목티	공완다,말논완,민가송,서공유,아차티,...			
사례 2	공목티,공완다	말논완,민가송,서공유,아차티,황안,한...			

계산하기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 가기](#)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취소**

· 배우자에게 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성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15%;" type="text"/> - <input style="width: 15%;" type="text"/>
---	--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성명	범장명	관계	배우자
----	-----	----	-----

본인(범장명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

동의 취소하기

**제공동의 완료된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 신청일자	제공동의 상태
기억남		2024/11/21	동의완료

-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을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 IV.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1.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한 후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Online Submission of Simplified Tax Data) interface. The main window shows a list of items to be submitted, including '소득기준 초과' (Income Tax Excess), '의료비' (Medical Expenses), an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s). A modal window is open, showing a grid of checkboxes for various deductions. The '근무처 선택' (Select Workplace) dropdow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2' callout. A '간편제출' (Simplified Submission)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3' callout. On the right, a summary table shows '고향사랑기부금' (100,000), '소득세 공제액' (90,909), and '지방소득세' (9,090).

## ○ 간소화 제출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
간편제출

**간편제출하기** 설문조사 가기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업무지)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2025-01-06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업무지)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업무지(원천징수업무지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제출**

- 제출처 확인후, 자료 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 61 -

## ○ 간소화 제출이력

###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예산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

#### 간편제출하기 설문조사 가기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간소화자료제출

#### ○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025-01-03 14:46:17	간소화PDF제출	간소화자료제출

- 제출이력사항에는 간소화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이 함께 관리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은 회수 없이 다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제출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회수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에서 「간편제출하기」를 선택

-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 위한 공제신고서 회수가 가능하며, 제출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료제공동의의 「 동의함」에 클릭하고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 제출처를 확인한 후, 자료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온라인 (On-line) 제출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산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

간편제출 >

설문조사 가기 >

###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업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제출일자	2025-01-06			

**○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업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업무자(원천징수업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제출

- 제출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하면 돌아가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산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

간편제출 >

설문조사 가기 >

###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업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방법	간소화PDF제출	제출상태	간소화자료제출
제출일자					

**○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025-01-03 14:46:17	간소화PDF제출	간소화자료제출

○ 회사에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수 및 제출 이력' 화면을 선택합니다.

**간편제출하기(On-line)**

**편리한 연말정산**

- 이용안내 도움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 이 서비스는 회사의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선행되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최종 확인해야 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서 등의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회사)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을 할 소속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등록해야 근로자가 간편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 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 자료

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바로가기 >

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

**유의 사항**

- 회사가 근로자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송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회사로 다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간소화자료만 수정할 경우에는 회수없이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최종분만 수록) 단 회사가 확인한 후에는 수정제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연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공제를 받은 증명자료는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방법 문의**

! 서비스 이용방법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상담 (콜텍스 이용-세법문의) : ☎ 126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2 > 5

○ 공제신고서를 「회수」 한 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회사가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취소'를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한 경우 「회수」 없이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하기** 실문조사 가기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혹은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본사항**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방법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제출상태	공제신고서제출
제출일자	2025-01-06				

**○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제출방법	처리상태
1			2025-01-06 09:38:1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2			2025-01-03 13:48:45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3			2025-01-03 13:47:50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4			2025-01-03 13:37:4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회수
5			2025-01-03 09:27:55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공제신고서제출

회수